

원심이 신문사의 공정보도특권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에 대한 경솔한 무시를 입증함이 없이
사실상의 악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심을 허용한다.

Oweida The Tribune-Review Publishing Co.
599 A2d 230(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1991)

사건개요

펜실베이니아주의 웨스트모어랜드군에서 개업을 하고 있던 의사 Oweida 가 그의 환자인 Filabaum 을 치료하고 수술함에 있어서 그녀가 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러한 시술이 암의 치료에 불가피한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그녀가 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의사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였다. 그녀는 암 수술로 인하여 신체부위의 절단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침해를 입었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암에 걸려있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Filabaum 과 그녀의 남편은 Oweida 를 상대로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하면서 Oweida 가 그녀의 치료상태에 대한 내과전문의와의 상의를 하지도 않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진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한 수술경과에 따른 징후에 대하여도 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 대하여 웨스트모어랜드군에서 발간되는 두 개의 신문인 Sunday Tribune Review 와 The Sunday Tribune 이 위 소송제기 사실을 보도하면서 소장상 주장된 사실과 중요부분이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의사 Oweida 는 위 신문에 대하여 이러한 기사가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이며 공정보도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배심원은 위 신문사가 Oweida 에게 배상적 손해액으로 10 만 달러를, 징벌적 손해액으로 10 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하였다. 그 후 지연손해금 47,480 달러도 원심법원에 의하여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위 신문사(상고인이라 한다)는, ① 소장상 주장된 사실을 재 진술한 뉴스기사는 그것이 과도하고 독립하여 별개의 명예훼손적인 자료를 내포하지 아니하므로 공정보도특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② 원심판사가 배심원에 대하여 한 지시 중 상고인이 Oweida(피상고인이라 한다)와 사실확인 등을 위한 접촉도 없었고 기타 달리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공정보도특권이 남용되었다는 사실인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③ 신문기사가 진실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면서도 게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하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한 입증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액의 선고는 유지될 수 없으며, ④ 원심판사가 배심원에 대한 지시 중 공인된 보도기준으로부터 명백히 이탈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사실상의 악의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고, 기사에 나타난 보도내용이 비록 소장상 주장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사실은 허위라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⑤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송지연의 일부를 초래한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의 선고가 부적합하는 이유로 평결불고려판결 또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평결요지

1. 원심이 신문사의 공정보도특권의 상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원심판사가 배심원에 대하여 신문사의 특권남용을 결정한 이후 신문사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정하여 지시하지 아니한 것은 파기할 수 있는 하자이다.
2. 원심이 신문사의 의료과오소송을 보도함에 따른 명예훼손소송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지시함에 있어 게재된 기사가 공인된 보도절차로부터 명백히 일탈한 결과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사실상의 악의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사실상 악의의 존재는 게재될 기사에 대한 근거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믿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역시 파기할 수 있는 하자이다.
3. 펜실베이니아 주법상 명예훼손소송은 인신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지연배상금은 선고될 수 없다.

판결이유(요약)

McEwen, Del Sole, Hester 판사 등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비록 펜실베이니아주법이 소장 등에 포함된 명예훼손적 주장이 그것이 행해진 절차에 관계가 있다면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부여되지만, 사법절차에서 행해진 진술은 다만 조건부특권을 가진다. 이 경우 그러한 특권을 남용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만약 그러한 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것이고, 명예훼손 된 사람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목적만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 기사에 포함된 정보가 허위이고 부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표에 대하여는 특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한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 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다시 공표하는 자가 원래의 명예훼손자에 의한 위험부담과 유사한 책임을 진다는 관습법에 대한 예외로서 발전되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금세기초부터 이러한 재공표원리(republication rule)를 채택하고 그동안 이러한 원리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원리 하에서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재공표한 자는 그러한 진술을 자신의 진술로 「채택하였다」는 의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의 관습법체계 하에서는 신문이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이나 보도가치가 있는 기사를 게재할 때 그 명예훼손적 사실의 게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언론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비록 관습법은 이러한 진술이 사실인 한은 명예훼손을 공표한 자를 면책하지만 신문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 명예훼손적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여야 진실성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공표원리에 의하여 보도 가치있는 사건의 보도에 대한 냉각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은 오랫동안 언론이 이러한 기사가 명예훼손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공적 절차에 대한

기사를 공표할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하여 왔다. 즉 그러한 기사가 공정하고 정확한 개요를 제시하는 한 법은 보도자가 명예훼손적 진술을 채택한다는 가정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면책특권의 적응문제에 있어 배심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상고인이 정확하고 완결적이지 아니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조건부 특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만약 상고인이 이러한 남용으로 인하여 조건부 특권을 상실하였다면 신문사가 이러한 게재상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정보도특권의 남용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주석에 의하면 사법절차에 관한 보도는 그것이 정확하고 완전하든지 또는 보도된 사건의 공정한 축약인 한은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

2. 상고인은 원심이 상고인의 공정보도특권에 기한 평결무시판결신청을 부인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렀다고 다투고 있으나 당원은 원심이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본다.

공정보도특권이 남용되었는지의 문제는 사실심법원의 「핵심적 사항」 원리(a 「gist」 or 「sting」 test)에 의하여 약화되었다. 「하나의 진술이 만약 그 핵심사항이 진실하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하다. 즉 수령자가 구체적 진실의 진술이 초래할 것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면 그러하다.」

문제는 합리적인 사람이 소장상의 주장사실과 기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기사가 공정하고 정확한 소장상의 주장사실을 기술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이다. 만약 독자가 그러한 기사가 본질적으로 소장상의 주장사실보다 더 「핵심적」인 사항을 게재하였다면 공정보도특권이 남용되고 따라서 이러한 특권이 박탈되게 된다.

원심은 이 사건의 상황 하에서 상고인의 평결무시판결신청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배심원이 소장상 주장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소장상 주장사실이 아직 재판상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임에 대한 조건적 문언(qualifying language)이 없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 이러한 보도는 부정확하고 사실적이지 아니하다고 원심이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보도가 조건부 특권을 향유하는 한 Filabaum 의 소장에 포함된 주장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배심원은 신문사가 소장상 주장은 단지 증명되지 아니하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건부특권을 상실하였다고 정당히 평결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상고인이 제출한 평결무시판결을 거부함에 있어 법률상 하자 또는 재량의 남용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3. 상고인은 다음으로 원심에서 배심원들에 대한 지시상의 하자는 재심선고를 필요로 한다고 다투고 있다.

원심은 배심원이 결정하여야 할 정확한 문제가 Filabaum 의 소장상의 주장사실을 보도할 신문사의 조건부 특권의 남용 여부에 관한 것임에도 배심원에 대한 평결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하였다.

즉 원심은 상고인의 소장상 주장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조건부 특권을 남용하여 이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장의 주장사실의 진실성과 허위성의 문제 및 상고인의 과실점의 존부에 관한 조사에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피상고인은 이 사건에서 만약 징벌적 손해액의 배상을 받기 위하여 문제의 기사가 사실상의 악의를 가지고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연방수정헌법 제 1 조는 개인이 공표자로부터 공중의 관심사의 문제에 관련된 명예훼손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액을 제한하고 있다. 즉 수정헌법 제 1 조는 허위 및 명예훼손적 사실에 대하여 만약 원고가 「사실상의 악의」 즉 허위성의지실(knowledge of falsity) 또는 진실에 대한 경솔한 무시(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추정손해액 및 징벌적 손해액(presumed and punitive damages)의 선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한 증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실상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원고로 하여금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피고가 그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그가 주관적으로 그의 진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사실상 공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가졌다는 결론을 허용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문을 가진 공표는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대한 경솔한 무시로 나타나고 따라서 사실상 악의를 입증하게 된다. 」

「단순한 과실이나 경솔은 사실상의 악의의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배심원에 대한 지시에서 상고인 측에서의 사실상의 악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공인된 보도절차를 명백히 일탈한 결과이었다」는 사실인정에만 근거하여 피상고인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하자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관건적 문제는 공정보도특권을 남용하였느냐 이므로 상고인이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Filabaum 의 소장상 내용을 보도하는 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배심원에 대한 지시에 있어서 배심원이 만약 기사내용에 대한 상고인의 조사가 매우 적절치 아니하다고 취소한 경우 상고인이 징벌적 손해액의 선고에 요구되는 「사실상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역시 부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에게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

4. 다음 상고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살핀다. 명예훼손소송은 치명적인 것은 아니나 심각한 손해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신손해(bodily Injury)의 구제를 위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고 오히려 평판(reputation)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당원의 판례는, 감정상의 침해, 평판의 손실, 모욕 및 정신적 고통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이 인신사고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신침해배상소송에서만 허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이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한다.